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사무의 위임)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.

1.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: 당해 기관의 장

2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물품 : 시의회사무처장

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제1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·축산물 또는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6조제3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중 행정관리국(회계과)란을 삭제한다.

### 서울특별시 시민 창안제도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 창안제도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직접 또는 우편”을 “직접·우편 또는 인터넷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시정개발담당관”을 “조직제도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제도개선담당사무관”을 “시민창안업무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시장은 각 기금의 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. 다만,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의 자금배정요구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배정한다.

제23조제3항중 “여유자금”을 “당해기금의 자금”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,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.

②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특별회계 등의 여유자금의 우선예탁)”을 “(기금의 자금 예탁 등)”로 하고,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금의 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4.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여부에 관한 사항

③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“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”을 “기금의 자금을”로 한다.

④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”을 “기금의 자금을”로 한다.

⑤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”을 “기금의 자금을”로 한다.

⑥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”을 “기금의 자금을”로 하고,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⑦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, 동조제3항중 “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”을 “기금의 자금을”로 한다.

⑧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“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”을 “기금의 자금을”로 한다.

⑨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계정과 소방학교계정으로 구분하고,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,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할 수 있다.

⑩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,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.

⑪서울특별시감체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”를 “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2
------	----

2002. 12.  
재정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2년 11월 4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3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 
(2002년 12월 26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원 세훈)

가. 폐지이유

- 우리시가 설치한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근거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·운영하였으나, 여러 유형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,
- 이 조례의 내용을 담는 각 시설유형별 개별조례의 제정을 추진하여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관련 조례의 제정이 완료되었기에 존치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내용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중)

- 본 조례는 1998년 4월 30일 그동안 각 시설별로 규정된 4개 조례 「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」, 「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」, 「중소기업과농수산업육성·지원시설설치 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」, 「직업전문학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」와 「서울놀이마당설치 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」를 통·폐합하여 제정하였으나,
- 통합조례인 본 조례가 각 시설별 특성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, 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시 본 조례를 폐지하고 각 개별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13명, 출석위원 11명, 전원일치)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